

구미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발의연월일	2026. . .
발 의 자	강승수 의원 외 1인

구미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강승수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2026. . . .

발 의 자: 강승수·정지원 의원(2인)

찬 성 자: 김재우·김정도·신용하·이명희
이상호·이정희·추은희 의원(7인)

1. 제안이유

구미시의 산업적·지리적·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마이스(MICE)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여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장의 책무(안 제4조)
- 나. 마이스산업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등(안 제5조)
- 다. 마이스산업 육성사업(안 제6조)
- 라. 재정 지원(안 제7조)
- 마. 전담조직 설치·운영(안 제8조)
- 바. 마이스산업 정책 협의회(안 제9조~제11조)

사. 사무의 위탁(안 제13조)

아. 홍보대사 위촉(안 제14조)

자. 포상(안 제15조)

3. 조례안: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제6조, 제9조,
제16조제2항제1호

2)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

3)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나. 부서검토: 낭만관광과 의견제출(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붙임)

구미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의 마이스(MICE)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구미시의 국제적 브랜드를 높이고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마이스(MICE)산업은 구미시의 산업·문화·지리적 특성을 반영하고 스마트 마이스 기반의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발전하여야 하며, 민·관협력과 지역 상생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지향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이스(MICE)산업”이란 회의(Meetings), 포상 관광(Incentives Travel), 컨벤션(Conventions), 전시·박람회(Exhibitions·Events) 등을 유치·개최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복합 서비스 산업을 말한다.
2. “유니크베뉴”란 역사·문화·산업·자연 등을 지역 고유의 자산을 활용하여 마이스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장소를 말한다.
3. “스마트 마이스”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마이스산업의 유치, 운영, 평가 전 과정을 디지털화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이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육성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마이스산업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육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마이스산업의 발전 기본방향과 목표
2. 마이스산업의 육성 시책 및 추진전략
3.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마이스산업 활성화 방안
4. 마이스산업 관련 행사에 관한 사항
5. 마이스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민간 참여 촉진 방안
6. 마이스산업 관련 시설의 설치 및 확충방안
7. 마이스산업의 홍보·마케팅 전략 방안
8.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마이스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마이스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육성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그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마이스산업 육성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제회의, 산업특화 기술전시회, 포럼 등 행사 유치 및 개최 지원 사업
2. 지역 특화 유니크베뉴의 발굴·지정 및 활용 사업
3. 전문 인력 양성 및 전문기관·대학 등 외부기관과의 연계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
4. 국내외 마이스 관련 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사업
5. 경상북도 및 타 지자체와의 공동 마이스산업 기획·운영 사업
6. 마이스산업 정보시스템 및 통계조사 구축 사업
7. 스마트 마이스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
8. 구미시 지역 문화·관광과 연계한 마이스 프로그램 개발사업
9. 마이스산업 인프라 확충 및 운영지원
10.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재정 지원) 시장은 국내외 마이스산업 주관단체 등이 구미시에 마이스 행사를 유치·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전담조직 설치·운영)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 육성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조직을 설치·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조직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전담조직의 업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전담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마이스산업 정책 협의회 설치·기능)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 관련 정책 자문 및 민관 협력 강화를 위하여 협의회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마이스산업 육성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마이스산업 전담조직의 추진업무에 관한 사항
4. 정책 추진 우수 단체·기업·개인의 포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협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마이스산업 업무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구미시의회 의원
2. 마이스산업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마이스산업 관련 기관 종사자

4. 그 밖에 마이스산업 관련 분야 전문가

④ 협의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이 제적되거나 기피 또는 회피한 경우 해당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마이스산업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⑤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전문기관, 단체, 대학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거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13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8조에 따라 설치·지정되는 전담조직이나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홍보대사 위촉)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홍보 및 대외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시장은 마이스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마이스산업 관련 단체나 기업, 개인 등에게 「구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회의”란 상당수의 외국인이 참가하는 회의(세미나·토론회·전시회·기업회의 등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국제회의산업”이란 국제회의의 유치와 개최에 필요한 국제회의시설, 서비스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 3 ~ 8. (생략)

제5조(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지정 및 설치)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제회의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국제회의시설을 보유·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제회의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전담조직의 지정·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은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국제회의의 유치와 촉진에 관한 사항
2. 국제회의의 원활한 개최에 관한 사항
3. 국제회의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 국제회의시설의 설치와 확충에 관한 사항
5. 국제회의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위생·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6. 국제회의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 및 법령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국제회의산업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국제회의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의 방법·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국제회의시설의 건립 및 운영 촉진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시설의 건립 및 운영 촉진 등을 위하여 사업시행기관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회의시설의 건립
2. 국제회의시설의 운영
3. 그 밖에 국제회의시설의 건립 및 운영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6조(재정 지원) ① (생략)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설치된 전담조직의 운영
2. ~ 5. (생략)
- ③ ~ ④ (생략)

□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시산업”이란 전시시설을 건립·운영하거나 전시회 및 전시회부대행사를 기획·개최·운영하고 이와 관련된 물품 및 장치를 제작·설치하거나 전시공간의 설계·디자인과 이와 관련된 공사를 수행하거나 전시회와 관련된 용역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전시회”란 무역상담과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홍보를 위하여 개최하는 상설 또는 비상설의 견본상품박람회, 무역상담회, 박람회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전시회부대행사”란 전시회와 관련된 홍보 및 판매촉진을 위하여 개최되는 설명회, 시연회, 국제회의 및 부대행사 등을 말한다.
4. “전시시설”이란 전시회 및 전시회부대행사의 개최에 필요한 시설과 관련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전시사업자”란 전시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전시시설사업자 : 전시시설을 건립하거나 운영하는 사업자
 - 나. 전시주최사업자 : 전시회 및 전시회부대행사를 기획·개최 및 운영하는 사업자
 - 다. 전시디자인설치사업자 : 전시회와 관련된 물품 및 장치를 제작·설치하거나 전시공간의 설계·디자인과 이와 관련된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자
 - 라. 전시서비스사업자 : 전시회와 관련된 용역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
6. “사이버전시회”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개최하는 전시회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업무)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회의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국제회의의 유치 및 개최 지원
2. 국제회의산업의 국외 홍보
3. 국제회의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배포
4. 국제회의 전문인력의 교육 및 수급(需給)
5.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전담조직에 대한 지원 및 상호 협력
6. 그 밖에 국제회의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업무

검 토 의 견 서

부서명 : 낭만관광과

조 례 명	구미시 마이스(MICE)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p><input type="checkbox"/> 검토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거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제6조, 제9조, 제16조 ▪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p><input type="checkbox"/> 주요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및 정의, 기본이념(안 제1조~제3조) ○ 시장의 책무(안 제4조) ○ 마이스산업 육성계획의 수립·시행(안 제5조) ○ 마이스산업 육성사업(안 제6조) ○ 재정 지원(안 제7조) ○ 전담조직 설치·운영(안 제8조) ○ 마이스산업 정책협의회(안 제9조~제11조) ○ 사무의 위탁(안 제13조) ○ 홍보대사 위촉, 포상(안 제14조, 제15조) <p><input type="checkbox"/> 검토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특화산업(반도체, 방산 등)과 연계하여 관광산업 발전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단, 마이스산업 인프라(컨벤션시설, 숙박시설, 교통 등) 부족으로 형식적·선언적 조례로 그칠수 있어 인프라 확충, 민관협력, 지역상생을 통해 경북내 컨벤션과의 차별적인 경쟁력 확보가 우선되어야 함 <p><input type="checkbox"/> 조례 제(개)정에 따른 향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대효과 :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 소요예산 : 50백만원(마이스산업 유치개최에 따른 인센티브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붙임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상비용 연평균 1억원 미만) ○ 문 제 점 : 해당없음 	

구미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7조(재정 지원) 시장은 국내외 마이스산업 주관단체 등이 구미시에 마이스 행사를 유치·개최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3억원미만인 경우

4. 작성자

- 낭만관광과 관광정책팀 황경아(☎054-480-2666)